

2016년도 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업체 모집 공고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업체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관세청장

1. 사업 개요

-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획득 준비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업체당 지원 한도액 1,6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 지원규모 : 2016년 예산 5.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2.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3.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분야 공인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5.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다만, 수출기업은 공인신청 전에 당해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60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 가능)6. 신청인과 신청업체가 관세법 제175조 각 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p>※ 5~6번의 경우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참조(관세청 홈페이지 AEO코너)</p> |
|--|

2. 신청 요령

○ 신청범위 : 수출부문

○ 신청시기

- (신청·접수) 2016. 1. 4(월) ~ 2016. 1. 30(토)

- (평가·선정) 2016. 2. 1(월) ~ 2. 6(금)

- (지원업체수) 지원수요 및 예산을 감안하여 선정될 예정

※ 신청은 필요시기에 연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시행

○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자료 참고)

②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확인 자료

⇒ 체납사실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회계감사 의견(외감업체 해당)

③ 중소기업청 발급 중소기업 확인서

- (선택서류) * 가점 사항으로 해당업체만 제출

① MRA체결국 바이어나 거래업체로부터 AEO 기준 충족 요구 받은 서류

② AEO 공인받은 대기업 협력업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기타 기업 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접수

- 참여 희망 중소 수출기업은 신청서에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 관할 본부 세관장에게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문서접수 및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85	02-548-02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서울 세관 우)135-702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8	051-620-1118	부산 중구 총장대로 20 부산 세관 우)600-736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6	032-891-9203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11층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53-230-5357	053-230-5636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 세관 우)704-841
광주본부세관 (납세심사과)	062-975-8076	062-975-3106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세관 우)500-480

※ 평택관할은 인천본부세관, 제주지역은 광주본부세관으로 신청

3. 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향후 일정



- 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서 사전진단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관세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 이후 사업진행은 관리기관[(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 담당

4. 기타 사항

- 신청업체는 관세청에서 AEO 공인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예비심사 무료지원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관련 문의

(사)한국AEO진흥협회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주원 연구원	김홍주 연구원	장 훈 주무관
070-4070-7216	070-4070-7957	042-481-7894

※ 중소기업 AEO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전/공인후 교육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하오니,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AEO진흥협회 및 UNI-PASS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공인획득분야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보세구역운영 <input type="checkbox"/> 화물운송주선업 <input type="checkbox"/> 보세운송업						
신청기업 (소재지:)	업체명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기업형태	예시) 외감 중소기업		업태	예시) 제조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주요생산품목	예시) 자동차부품(휠)		
	홈페이지			종업원수(명)	(상시근로자수)		
	주소	<본사> 우(-)			전화번호	() -	
<사업장> 우(-)			전화번호	() -			
총괄책임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FAX		
최근 3년 수출실적	전년도 수출액		전년도-1 수출액		전년도-2 수출액		
	천불		천불		천불		
최근 3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1 매출액		전년도-2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컨설팅기관	기관명	있는 경우만 기재		계약금	(선택사항) 백만원		
주요 수출국	수출거래량이 많은 주요 국가(3곳 이내)						
기업특성 (가점)	<중소기업청지정> <input type="checkbox"/> 글로벌강소기업/차이나하이웨이육성사업 <input type="checkbox"/> 수출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지자체지정> <input type="checkbox"/> 유망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차세대수출중소기업 <중기회지정> <input type="checkbox"/> 우수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우대사항	1. 바이어로부터 AEO에 준하는 기준 충족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AEO공인 대기기업의 협력업체로 AEO인증에 대한 권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안전관리질의서, 구매계약서, 심사계획서 등 제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명] (대표이사)			
세관장 귀하							
※ 첨부서류 : 기업특성/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및 별첨 구비서류 제출							

【별첨 1】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관세청장 및 관세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데 동의합니다.

*** 제공할 정보의 내용**

- 법인 및 개인식별 정보(법인명, 성명, 법인, 생년월일, 주소 등)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재무정보
- 본인과 관련된 수출입 통관 관련정보
- 본인과 관련된 기업의 기타 정보 등

	년	월	일
■ <u>동의자 성명(법인명) :</u>	(인)		
■ <u>법인등록번호 :</u>			
■ <u>사업자등록번호 :</u>			
■ <u>동의자 성명(대표) :</u>	(인)		
■ <u>생년월일 :</u>			
■ <u>주 소 :</u>			

※ 법인기업인 경우 동의자 성명(법인명)에 법인적인 과 동의자성명(대표)에 대표이사 도장(서명)을 확인하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이하만 작성하고, 동의자 성명(대표)란에 대표이사 도장(서명)을 확인.

【별첨 2】

결격사유 체크리스트(수출업체)

업체명 :

구 분	확인항목	해당여부	제출서류
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①) 해당		중소기업확인서 ¹⁾
	지원대상분야(지침§2① 별표1) 해당		
결격사유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신용정보조회자료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AEO협회 확인
	사업참여 제한조치 중인 업체		AEO협회 확인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점수 기재
	신청인과 신청업체가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법에 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법에 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269 ~ §271조, §274, §275의2, §275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단, §279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		
	채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여부 ²⁾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음		납세증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가능한 정도의 재정유지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확인
	① 최근 2년간 회계감사결과 「적정」 (외감업체만 해당)		
② 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 충족여부		1개 선택 제출	
-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 ³⁾		부채비율 기재 (부채/자본금*100)	
- 신청일기준 12월 이내 신용평가등급 투자적격 ⁴⁾		신용등급확인서류	
- 최근 3년간 연평균 5% 이상 매출증가(금액) ⁵⁾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5% 이상 수출증가(금액)		계약서 등 증명자료 제출	
- 위 같은 기준이 충족됨을 증명 ⁶⁾			

1) 중소기업청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2) 종합인증수출업체(AEO)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 중소수출기업 기준 다. 재무건전성

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기업경영분석>기업경영분석지표 조회>

(통계분류선택)자산·자본의 관계비율, (지표선택)부채비율, (업종선택)해당업종 선택

4)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회사신용등급 BBB- 이상

5) 4년간의 매출액(수출액)을 사용하여 기하평균계산법으로 구한 값($=\sqrt[4]{\frac{\text{최종년도매출액(수출액)}}{\text{처음년도매출액(수출액)}} - 1$)

6) 시장상황, 전문가 의견, 향후 전망등을 통하여 업체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증명